

# 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-5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3월 11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제정이유

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지원 및 편의제공 등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강서구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조)

나. 장애인 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서구 장애인 총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(안 제5조)

다.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(안 제7조)

라.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함(안 제10조)

마.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·재활시설기관,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(안 제14조)

바. 구청장은 이동보장구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(안 제1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  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안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·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책임)** 구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.

### 제2장 장애인단체

**제4조(보호·육성)**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거주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장애인단체총연합회)**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연합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.

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장애인 복지증진

**제6조(실태조사)**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**제7조(장애인의 날 행사 등)**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,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)**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제공,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

**제9조(구의 책무)** ①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,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여성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**제10조(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)** ① 구청장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.

**제11조(공공부문 일자리 창출)**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
2.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

**제12조(고용촉진)**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
2.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·적성·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
3.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·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·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
4.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
5.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·교육 및 간담회 실시
6.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·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

**제13조(고용기업 지원)**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,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·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
2.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
3.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
4.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
5.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및 포상

**제14조(경비보조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·재활실시기관,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
2.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, 연구,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제5장 장애인 이동보장구 등 수리지원

**제15조(이동보장구 등 수리업체 운영)** 구청장은 이동보장구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·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(수리비용 지원기준)** ① 법 제66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(이하 “지정수리업체”라 한다)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.

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③ 수리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7조(수리비용 지원 절차)** ① 장애인 이동보장구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별지1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받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하며 수리기간이 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지정수리업체는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지정수리업체 취소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
2.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

### 3.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

#### 제6장 보칙

**제19조(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)**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20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2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)

| 장애인 이동보장구 등 수리 의뢰서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|-----|
| 이<br>용<br>자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주민등록<br>번호 |    | 성별 | 남·여 |
|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 | 장애유형 및 등급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 | 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여부 확인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이동 보장구 종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수리요구사항     |    |    |     |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수리 의뢰 업체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<br>장애인 이동 보장구 등 수리 의뢰서를 교부합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년    월    일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|    |    |     |
| 신청인 :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(서명 또는 인)  |    |    |     |
| 확인자 :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소속         | 직급 | 성명 | (인) |

